

제 554 호
1976.5.15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구 자 훈
편집장 : 문화홍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036 호 : 서울특별시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3

○ 훈 령

제 445 호 : 서울특별시 반상회 운영규정..... 3

○ 고 시

제 72 호 : 서울도시계획시설 (지하도및주차장) 결정
지적승인..... 8

제 107 호 : 도시계획시설 (시장) 신설결정및지적승인..... 8

제 108 호 : 서울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적승인..... 9

제 109 호 :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신설 일부변경결정및
지적승인..... 9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110 호 : 연탄에 대한 최고가격지정..... 10

제 112 호 : 사회단체등록취소..... 11

○공 고

제 103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1

제 104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2

제 106 호 : 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15

제 111 호 : 영동, 잠실, 천호 토지구획정리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 15

○예 규

제 332 호 : 서울특별시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규정중 개정
규정..... 15

○사 령..... 16

조 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회교육감
하 점 생 인
1976.5.13

○서울특별시조례제 1036 호

서울특별시학교군 및 중학구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중

<3 학 군>

- ① 성수, 화양지역을 성수, 화양, 잠실지역으로 하고
- ② 성수, 화양, 잠실지역에 일신중학교를 추가 편입한다.
(중건 4 학군 송파지역의 일신중학교는 계속 존속)
- ③ 성수, 화양지역의 언북국민학교는 5 학군에 편입하고
- ④ 성수, 화양, 잠실지역에 잠실국민

학교와 잠일국민학교를 추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6 년도부터 시행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 반상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6. 5.15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서울특별시훈령제 445 호

서울특별시반상회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시 못·반 설치조례 제6조에 의
하여 실시하는 반상회(이하 "회"
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개최) 반장은 회를 매
월 말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동장 또는 통장의 요
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회의외계) 회의외계는 다음
각요를 포함한 시민의 일상생활과
적결되는 반원 관심사로 한다.

1. 대민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2. 관내 유관기관의 새로운 소식
주지
3. 새마을의 날에 할일 토의
4. 반장을 경유하는 각종 민원사
합의 처리
5. 각종 취미활동 및 주부 관심
사에 관한 사항
6. 각종 새마을사업의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7. 기타 반원 요망사항

제4조(회의록비치) 반장은 별지제
3호서식의 회의록을 비치 기록하
여야 한다.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회의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건원이
합심 협력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동장 및 반담당공무원(봉사포함)
은 이를 지도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반장 위촉) ①동장은
동·반장의 추천에 의하여 유신이
념이 투철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망
을 받고 있는 관내 저명인사로서
반상회 운영에 지도적 역할을 담

당할 명예반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②명예반장을 위촉시는 별지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명예반장
이 할일을 설명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2개월마다 교체 위촉하여 사회
각계 인사의 회외의 활동기회를 널리
개방토록 한다.

제7조(반담당공무원 지정) ①동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근무
공무원(경찰직, 소방직 및 2급이상
공무원 제외) 또는 동장으로 반담
당 공무원(또는 봉사)을 지정하고
본인에게 담당반을 통지한다.

②담당공무원 또는 봉사는 회에 참
석하여 회의운영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외계의 시달) ①구청장은
정례회 개최 3일전까지 동장에게
동별회의 공동의제를 시달하여야 하
며, 동장은 동 자체회의외계를 참가
하여 개최 2일전까지 동장을 통하
여 반장, 명예반장 또는 반담당 공
무원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수시 개최하는 회 때에도 제1항
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9조(건의요망사항 처리) ①회에
참석한 담당공무원 또는 봉사는

회에서 채택된 반원 요망사항을 정리하여 동장에게 지체없이 서면 복명하여야 한다.

②동장은 동사무소에 별지제 2 호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처리부를 비치하고 제 1 합의 보고된 사항을 기재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해당기관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조속한 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의 요망사항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해당반원이 모두 알 수 있도록 다음 회에서 주지시켜야 한다. 다만, 처리중인 사항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통지를 실시한다.

제 10 조 (민방위 훈련 실시) ①회 개최 기회를 이용하여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참석자에게는 연간 훈련 의무시간에 반영토록 한다.

②회 개최시 민방위 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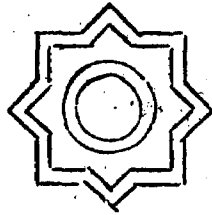
제 11 조 (평가) 구청장 및 동장은 년 2 회 (6월, 11월) 관내 각반의 회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우수반과 우수반장 및 우수명예반장을 선정 표창하고 우수 세마을사업장 또는 각종 사업현장등에 안내하여 노고를 위로할 수 있다.

제 12 조 (금지사항) ①반장은 회 개최에 따른 각종기록을 공적 목적이외에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②누구를 막론하고 회에 참석한 반원들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징수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



위 축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동 통 반 명예반장으로 위촉합니다.

19 년 월 일

○○구 ○○동장

인

<별지제 2 호서식>
반상회건의사학처리부

일	일	류	반	건의사학	조치

<별지제 3 호서식>
반상회회의록
 ○○동○○동○○반

일시		장소	
대상인원		참석인원	
참여자	반장 ()	평예반장 ()	담당공무원 ()

회의내용

특기사항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72 호

서울도시계획시설(지하도 및 주차장) 결정지적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지하도 및 주차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신설 및 변경)하고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가. 지하도 시설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회현동 2가 지하보도	회현동 2가광장	4,080	중 1,000 m ²
	(지하보도 및 상가)	"	5,080	
신 설	시청앞 광장지하보도 (지하보도 및 상가, 주차장)	시청앞 광장 (프라자호텔앞)	3,760	2층 지하1층 보도 및 상가, 지하2층 주차장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07 호

도시계획시설(시장) 신설 결정 및 지적 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 결정하고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 13조의 규정과 대통령령제 7753 호(75.8.22)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시청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6. 4. 14

서울특별시장

제 13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면은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5. 12

서울특별시장

○ 시설신설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시장(삼익)	영동포구 여의도동	1-990	1,126㎡	
"	시장(한양)	영동포구 여의도동	1-991	1,126㎡	
※ 도 면 생 략					
<p>○ 서울특별시고시제 108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적승인</p> <p>1. 건설부고시 제 465 호 (71.8.6)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0 조 및 제 13</p> <p>○ 공원지적 승인조서</p>			<p>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악구청 시민부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6. 5. 13 서울특별시 장</p>		
공원명	위	치	지적승인면적(㎡)	비	고
방배공원	관악구방배동		148,800		신시내공원
※ 도 면 생 략					
<p>○ 서울특별시고시제 109 호</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시설(주차장)신설 일부변경결정 및 지적승인</p> <p>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시내버스주차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 일부 변경 결정하고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p>			<p>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의 권한위임사택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악구청 시민부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6. 5. 14 서울특별시 장</p>		

가. 주차장신설 및 일부변경(폐지)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관악구 봉천동 167-4, 172-1	1,960㎡	신촌운수
"	영등포구 신도림동 1050-1, 1050-16, 18, 19, 20, 21, 22, 23, 24, 25	1,460㎡	남도운수
폐 지	도봉구 우이동 18-2	4,382㎡	새한버스
신 설	도봉구 쌍문동 509-2, 510-2	2,000㎡	새한버스

※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10 호

연탄에 대한 최고가격지정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제4조

에 따른 상공부 고시 제76-14호

가. 연탄의 최고가격

에 의거 서울특별시지역 연탄(2호탄)의 판매소도와 가정도의 최고가격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한다.

1976. 5. 14

서울특별시장

탄 종	최 고 가 격		비 고
	판 매 소 도	가 정 도	
2 호탄 (3.6 kg)	32.20 원	36.00 원	

나. 기간 : 고시한 날로부터 해제시 까지

부 칙

① 이 고시는 1976.5.14 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서울특별시고시 제42호는 이를 폐지한다.

○서울특별시고시제 112 호
 사회단체등록취소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제 7 조
 및 동법시행령 제 8 조의 규정에 의

기 해산된 사회단체를 다음과 같
 이 고시한다.
 1976. 5. 12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72 호	75.9.29	서울특별시 충진업협회	김성권	종로구신문로1가 1 171-5	사회단체 해 산

공 고

1976. 5. 13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 103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

<공 랑 개 요>

1. 사업장위치 : 선동구광장동, 구의농
 일부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어린이대공
 원-천호대교(입체교차로) 간 도로
3. 사업의 규모 :
 가. B = 8 m
 나. L = 200 m
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및준공예정 : 76.4.30 ~
 77.12.30
6. 사용또는수용할토지 : 별첨토지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
 주소·성명 :

1. 건설부고시 제 223 호 (75.12.31)
 로 고시된 어린이대공원-천호대교
 (입체교차로) 간 도로신설공사 구
 간내의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
 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
 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선동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외 소유자
 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주용대장)			소유자		관계인
		지번	자목	지적	지번	자목	지적	주소	성명	
1	광장동	산80-1	입아	0.6800보	산80-5	도로	(96명) 0.0304보	광장동385	김성섭	
2	"	산81-14	"	2.3515보	산81-16	"	(1,37명) 0.4521보	영문동1가 5-33	조석병	
3	"	산81-8	"	0.0800보	산81-8	"	(129명) 0.0409보	광장동399	이재곤	
4	"	산101-2	"	0.2029보	산101-2	"	(56명) 0.0126보		경성부	
5	구의동	산35-3	"	0.0714보	산35-11	"	(189명) 0.0609보	구의동198	김호선 김호선	
6	"	산35-4	"	0.2129보	산35-12	"	(106명) 0.0316보	동자동35- 28	이재화	
	계						(1,947명) 0.6427보			

동사건물가격조서

번호	소재지	구조	수용면적	사정		소유자		비고
				단가	금액	주소	성명	
1	성동구구의동 35-3	분묘1기				성북구구의동 250-5	김호선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04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
계획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 186 호 (62.12.20)
로 고시된 창신동 330 지내도로 신
설공사 구간내의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 도서는 중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5. 13

서울특별시 장

<p>공 략 개 요</p> <p>1. 사업장위치 : 종로구 창신동 330 의 56-창신동 330 의 46 간</p> <p>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창신동 330 번지 지내도로 신설공사</p> <p>3. 사업의 규모 : 가. B = 3 m 나. L = 115 m</p> <p>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p>	<p>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 1976. 5.10 - 1976.12.31</p> <p>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조서</p> <p>7. 토지 또는 건물외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 주소·성명 :</p>
--	---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건포시			분할후포시 (수용대상)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	종로구 창신동				330-93	대	43.2	창신 298-23	최영희	
2	"				330-87	"	1.3	보문 3 가 212-1	최병애	
3	"				330-69	"	13.7	신문 2 가 1-151	최익명	
4	"				330-85	"	2.4	창신 330 - 4	김용순	
5	"				339-2	"	13.4	명산·보산 남천 49	김중운	
6	"				330-92	"	13	창신 330 - 51	이부자	
7	"				30-91	"	1.5	창신 330 - 50	홍부희	
8	"				330-62	"	13	창신 330 - 52	조영준	
9	"				330-90	"	9.3	중림 61	김송본	
10	"				330-83	"	2.4	창신 138 - 39	최익명	
11	"				330-37	"	0.8	창신 329 - 7	백소저	
12	"				340-14	"	0.4	양명·양명· 양근 282	한철희	
13	"				340-19	"	2.4	창신 340 - 8	홍사석	
14	"				329-20	"	8.9	봉익동 99	양인숙	
15	"				329-20	"	16.7	서대문문화 11	김송본	
16	"				329-21	"	9.8	서대문문화 329 - 10	신태숙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상)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7	종로구 창신동				329-22	대	7.1	훈정 89-1	이일성	
18	"				340-18	"	7.5	재기 67-257	최순	
19	"				340-22	"	4.7	창신 340-17	이복순	
20	"				330-88	"	1.9	창신 330-29	최형식	
21	"				340-20	"	11.1	인천송월 1가 4	김영식	
22	"				340-21	"	5.2	창신 340-12	최진하	
23	"				340-84	"	0.5		동양척식 주식회사	
24	"				340-89	"	7.4	창신 472-12	김영숙	

계 24필지 198.2명

건물조사표

순위	소재지	구조	수용평수	소유자주소	소유자성명
1	창신동 340-12	목조와합	0.7	창신동 340-12	최진하
2	" 340-16	"	4.1	창신동 427-12	김영숙
3	" 340-7	"	1	창신동 340-7	김교영
4	" 329-11	"	1.3	훈정 89-1	이일성
5	" 340-8	"	2.1	창신 340-8	익관창
6	" 329-10	"	4.5	창신 329-10	신태숙
7	" 329-9	"	0.7	농익 99	양인숙
8	" 330-52	"	6	창신 330-52	조영준
9	" 330-50	"	0.5	창신 330-50	손덕수
10	" 330-51	"	2.1	창신 330-51	이부자

계 10동 23명

서울특별시공고제 106 호

환지계획 일부변경 공람공고

- 1. 영동 제2지구 추가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 예정지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변경 사유가 있어 환지 계획을 변경코져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 제47조 및 제55조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에 공한다.
- 2. 변경 내용에 대한 도면 및 조서는 당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우송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6. 5. .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111호

영동, 잠실, 천호 토지구획정리 환지계획 변경 공람공고

- 1. 잠실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 계획중 일부를 변경코져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55조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공람에 공한다.

- 2. 변경 내용조서 및 도면은 당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서류로 송달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6. 5. .

서울특별시장

예 규

서울특별시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6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인

◎ 서울특별시에규제 332호

서울특별시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 규정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제3호 내지 제10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 명

◎ 1976.5.13

문대문구 지방행정 사무관 문병규
증무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76.2.2-자 발명 제 49 호
징계처분(감봉 1월)을 동일자로
변경하여 전책에 처함.

문화공보실 지방행정 주사부 권옥주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1976.5.14

연로과 지방전기 기사보 조순영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2 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성북구 농림기원보 이주홍
발명제 279 호(76.5.11) 승진 및
전보발명을 승진결격사유(구속기
소) 발생으로 동일자로 취소함.

◎ 1976.5.15

양포장 지방행정 주사 김병강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1 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천호출장소 지방행정 사무관 김태완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지하철본부 지방서기관 최상근
지방부이사관에 임함.

11 호봉을 급함.
지하철본부운영담당관에 보함.
지하철본부 지방로목 기사 신운수
지방시설부기감에 임함.

17 호봉을 급함.
지하철본부기술담당관에 보함.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 주사부 권성순
지방서기관에 임함.

8 호봉을 급함.
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에 보함.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 주사부 안식환
지방서기관에 임함.

16 호봉을 급함.
공무원교육원교수부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 주사부 이경배
지방서기관에 임함.

11 호봉을 급함.
공무원교육원교수부근무를 명함.

◎ 1976.5.16

도시정비과 지방로목 기사 진석우
지방공무원법제 63 조 3 호의 규
정에 의하여 유격을 명함.

서울특별시